서울특별시 비공개 세부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법령	소관부서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감사위원회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복지정책과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 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시행령 제113조의3	도시계획과
●직무 발명의 출원 전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	발명진흥법 제19조	조직담당관
•본인의 공개 동의가 없는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노동정책담당관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 거래내역	외국환거래법 제22조	_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소방방재센터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	-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38세금징수과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법령	소관부서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빅데이터담당관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그 밖에 공개 시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시행령 제29조	법무담당관
•지역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환경정책과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지역돌봄복지과
•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	동물보호과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인사과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항	질병관리과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은 5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가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33조	교육정책과
●환자에 관한 기록 ※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의료법 제21조	보건의료정책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노동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동위원회 회의록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노동정책담당관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소상공인정책과

②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소관부서
을지연습 충무계획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민방위담당관
	 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을지연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공개 시 훈련의 내용과 전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민방위담당관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 관리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 대피시설 구조도 •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 ※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민방위담당관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비밀기록물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전시대비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 인력동원 계획 전시 소방대책 	공개 시 전시의 국정 운영 상황 등을 알 수 있음	민방위담당관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소관부서
귀빈참석 행사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 관련 숙소정보 등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국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 시 대통령 및 해외 주요인사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	대외협력담당관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테러진압 절차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공개 시 테러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민방위담당관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 위기·재난 시 행동요령 등이 국민공표용으로 제작된 경우는 공개 	공개 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민방위담당관
청사관리(방호)	 서울시 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서울시 청사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총무과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비축물자 보관장소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 운행경로 관련 계획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구조도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 위치, 세부도면, 구조도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③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소관부서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구조도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등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공개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소방재난본부 (소방관서)
E-11-1	• 급·배수 계획		상수도사업본부
	•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부서공통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공개 시 가해자 및 이해당사자의 보복 등으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여성권익담당관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공개 시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자치행정과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순찰 시간 및 경로	공개 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국민의 재산보호	• 인감업무, 주민등록, 여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자치행정과 시민봉사담당관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특정 지번의 매매가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부서공통

④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소관부서
진행 중인 재판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 재판확정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률지원담당관
수사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공개 시 가해자 및 이해당사자의 보복 등으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참고인 명단 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민생사법경찰단

5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소관부서
감사	•불시감사계획 ※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감사위원회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 [감사기법]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감사위원회
감독·지도점검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계획 ※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공개 시 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독·지도점검 등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감사위원회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등 관계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6호 판단)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부서공통
시험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 6호 해당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인재개발원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 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인재개발원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인재개발원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시험공고 후 공개	공개 시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인재개발원
입찰계약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부서공통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소관부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7호 해당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부서공통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부서공통
기술개발	●핵심산업기술 ●기술개발계획 ※ 7호 해당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공개 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음	부서공통
인사관리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심사조서, 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인사과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	● 사업확정 전 사업검토서 ※ 사업 확정 후 공개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부서공통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 완료 후 공개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조직담당관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부서공통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부서공통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부서공통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개별 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 내용 ※ 개별 위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 ※ 7호 해당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부서공통

6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 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소관부서
공무원	휴대전화번호(개인용)자택주소개인 이메일 주소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 가족관계 ●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퇴출후보자 명단 ●개인의 징계내역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인사과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인사과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소관부서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학력 및 경력 ※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인사과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인사과 인력개발과
공인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가족관계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학력 및 경력 ※ 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 범죄사실 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소관부서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등 정보 ※용역사업을 위탁받은 주체는 업체이지, 업체 직원이 아니며, 용역사명과 참여인력의 이름을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음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일반시민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 가족관계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 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 여부• 종교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 범죄사실 기록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도시계획 관련 주민동의서 복지센터 입소 관련 기록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개인별 보조금 수령여부 및 지원비용 ※ 전체 지원비용 및 지원건수 등 현황자료는 공개 가능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 진정인(본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공개 제3자 특정인이 제기한 민원내용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소관부서
법인·단체·기업· 위탁업체·개인 등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출연재산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등기소, 금융기관 등)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예산서 총사업비 자급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별도 검토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사용의무, 출연재산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 관련 법에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공개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하)도급 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부서공통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소관부서
 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업체가 제출한 사업자 선정 제안서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시 탈락업체가 받은 점수 및 평가내용 *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 	공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부서공통

图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소관부서
건축, 주택건설	●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검토결과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부서공통
도시개발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 		
지역개발 계획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서울특별시 비공개 세부기준(부서별)

소관부서	대상정보	법적근거 (제9조제1항)
부서공통	•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제3호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제3호
	●특정 지번의 매매가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입찰·계약]	제5호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기술개발]	제5호
	• 핵심산업기술	
	• 기술개발계획	
	[의사결정·내부검토]	제5호
	● 사업확정 전 사업검토서	
	●연구용역 중간보고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개별 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 내용	
	[공무원 개인정보]	제6호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소관부서	대상정보	법적근거 (제9조제1항)
부서공통	(공인 개인정보)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개인 이메일 주소 • 가족관계 • 학력 및 경력 •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 범죄사실 기록 • 납세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제6호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등 정보 [일반시민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 여부 ●종교 ●범죄사실 기록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도시계획 관련 주민동의서 ●복지센터 입소 관련 기록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개인별 보조금 수령여부 및 지원비용 ● 페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제3자 특정인이 제기한 민원내용	제6호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등 관계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제6호

소관부서	대상정보	법적근거 (제9조제1항)
부서공통	[법인·단체·기업· 위탁업체·개인 등]	제7호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출연재산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등기소, 금융기관 등)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예산서	
	• 총사업비	
	• 자급계획	
	•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 핵심산업기술	
	• 내부자금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업체가 제출한 사업자 선정 제안서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시 탈락업체가 받은 점수 및 평가내용	
	〔건축, 주택건설〕	제8호
	●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검토결과	
	〔도시개발〕	제8호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	
	[지역개발 계획]	제8호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소관부서	대상정보	법적근거 (제9조제1항)
감사위원회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제1호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제3호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022
		ne -
	●불시감사계획 - 보기기가 어무 제가이	제5호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계획	
	●물시 조작·단극계획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 본사 시그·급선 법이 제한한	
교육정책과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노동정책담당관	•본인의 공개 동의가 없는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제1호
	•노동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동위원회 회의록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제1호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	
	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동물보호과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제1호
대외협력담당관	[귀빈참석 행사]	제2호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 관련 숙소정보	
	등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민방위담당관	[을지연습 충무계획]	제2호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 참가기관명	
	● 사건·실시계획	
	• 기본계획	
	• 사건메시지	
	•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 관리]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	

소관부서	대상정보	법적근거 (제9조제1항)
민방위담당관	[전시대비]	제2호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 인력동원 계획	
	●전시 소방대책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 테러진압 절차	
	•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민생사법경찰단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제3호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수사]	제4호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참고인 명단	
	• 수사의견서	
	• 범죄인지보고서	
	●불시 조사·단속계획	제5호
법무담당관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그 밖에 공개 시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호
법률지원담당관	[진행 중인 재판]	제4호
	● 소 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 준비서면	
	● 법률자문 결과	
	● 사실조회 결과	
	● 조 서	

소관부서	대상정보	법적근거 (제9조제1항)
보건의료정책과	• 환자에 관한 기록	제1호
복지정책과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제1호
빅데이터담당관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제1호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시설 및 위험물관리]●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구조도	제2호
	• 급·배수 계획	제3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제3호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지방세)의 부과 또 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제1호
소방방재센터	•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제1호
소방재난본부	 [주요시설 및 위험물관리]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 ●비축물자 보관장소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 위치, 세부도면, 	제2호
소방재난본부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구조도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제2호
소상공인정책과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제1호
여성권익담당관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제3호
인사과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호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심사조서, 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5호

소관부서	대상정보	법적근거 (제9조제1항)
	(공무원 개인정보) •퇴출후보자 명단 •개인의 징계내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학력 및 경력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제6호
인력개발과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제6호
인재개발원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제5호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제6호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인감업무, 주민등록, 여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정보공개정책과	(비밀기록물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제2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제1호

소관부서	대상정보	법적근거 (제9조제1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 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제1호
조직담당관	● 직무 발명의 출원 전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	제1호
지역돌봄복지과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1호
질병관리과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제1호
총무과	[청사관리 (방호)] • 서울시 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 서울시 청사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 청사 경비 초소 위치 •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 경비 및 순찰일지 •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제2호
환경정책과	•지역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제1호